

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및 복구대상비탈면 허가기준 검토 안내

□ 배경 및 목적

- 담당자, 설계자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및 복구대상 비탈면 허가기준을 잘못 적용함에 따른 산지관리·복구의 악용사례 방지
- 산지전용허가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인·허가 검토 단계부터 산지 복구단계까지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른 산지 개발 및 복구 필요

□ 주요 검토 내용

- **(산지관리의 기본원칙)**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, 수원 보호, 자연생태계의 보전, 산지경관 보전,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함(법 제3조)
- **(승인기준 적합)**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·신고의 사업계획 수립 및 인·허가 검토단계에서부터 중·횡단도가 포함된 복구 및 사업계획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함(법 제40조, 시행규칙 제42조)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상 재해영향평가 협의된 산지전용지의 경우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와 배치되지 않도록 함
 - *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, 주된 인·허가 부서에 통보
- 허가취소지 및 불법산지전용지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변 산림 현황을 반영하여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따라 산지로 복구해야 함
 - 당초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과는 별개로 복구대상 산지 전체를 산지로 계속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변 현황 및 재해위험성 등을 고려
 - 복구설계서 검토단계에서 개발행위, 재해예방 부서와 관계 규정 상 지장없는지, 복구공사에 지장이 예상되는 사항은 없는지 사전 확인

붙임 1. 산지복구 역할별 업무

2. 복구설계서 승인 검토 시 주요 확인사항. 끝.

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붙임1 | 산지복구 역할별 업무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
| 역 할 | 업 무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수허가자(복구의무자) | 사업계획단계부터 사업예정지 및 주변 산림 현황을 고려하여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허가 및 복구기준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허가조건, 복구 이행 |
| 복구설계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사업계획서와 주변 산림 현황을 고려하여 산지복구 범위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 2)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 |
| 복구감리자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사업계획서와 주변 산림 현황을 고려하여 복구설계서의 산지복구 범위와 목적이 적합한지 검토 2) 복구공사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|
| 관할청(담당 공무원)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인·허가 검토단계부터 주변 산림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이 허가 및 복구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2)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복구기준 및 현황에 맞는 복구설계서 인지 확인 후 승인 3) 올바른 복구공사가 이루어져 향후 복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책임 관리 |

붙임2 복구설계서 승인 검토 시 주요 확인 사항

| 연번 | 복구설계·감리자, 복구의무자,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|
|---|---|
| 1 | 산지복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려면 복구공사의 역할별로 그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 |
| 2 | 복구설계서 작성 시 산지복구의 범위 및 목적이 설정되어야 하며, 복구 공종이 선정된 이유와 명확한 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함 |
| 3 | 복구설계서에는 복구대상지역 안에 건축물·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 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*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지전용 인·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|
| 4 | 복구대상 산지의 유입구 및 유출구를 포함한 배수 형태를 확인 |
| | ① 개발 이전의 산림 유역 내 유수형태를 검토하고 복구대상 산지의 집수구역 하부에 인가·공공시설 등이 있는지 확인 |
| | ②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등을 설치 |
| ③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시설을 설치 | |
| 5 |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 미터 이상의 흙으로 덮어야 함 |
| 6 | 복구를 위해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주변 산림·토지이용 현황과 산지훼손이전 임상·임황을 고려하여 산지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함 * 더불어 복구 이후 산지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방향도 고려 |
| 7 | 복구의무자와 소유주간 의견 충돌, 진·출입 문제들로 인해 산지 복구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복구명령 또는 복구설계서 작성단계에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 |

* (부적합 사례) ① 허가를 취하였으나 향후 개발을 목적을 복구설계서에 반영해 옹벽을 준치하고 자연배수를 방해하는 옹벽을 추가 설치 ② 자연배수를 무시하고 하류까지 배수방법이 없는 유출구를 축사 방향으로 조성 ③ 개발하면서 조성한 길 및 전기 시설이 복구설계에 반영